

단국대학교 동아리연합회 회칙

(2022년 11월 25일 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단국대학교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라 칭한다.

제2조(목적)

- 본회는 창조적 대학문화 창달의 주체인 동시에 전 동아리인의 역량을 통합하고 건전한 동아리 문화를 창출해 나감을 목적으로 한다.
- 본회는 학원 민주화 및 대학의 자율화를 선도적으로 수렴하여 동아리의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동연에 등록된 동아리의 순 회원으로 한다. (20.09.17 개정)

제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본회의 회원은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 본회의 회원은 본회 및 회원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거나 정당한 동아리 활동에 침해를 받을 경우 이에 저항할 권리를 갖는다.
- 본회의 회원은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갖는다.

제5조(조직)

- 본회의 의결기구로서 동아리연합회 총회, 동아리 대표자 회의, 운영위원회를 두고, 동아리연합회장, 부회장, 집행부를 둔다.
- 본회의 각 동아리의 유지 영역에 따라 7개 분과로 구분하고 각 분과장을 둔다.

제6조(의결)

- (일반 정족수) 모든 회의는 재적 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되며 모든 회의의 안건은 재적 인 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 (특별 정족수) 제13조에 규정된 대표자 회의 사항 중 8항은 재적인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1/2 이상의 찬성에 의해, 2항은 재적인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에 의해 의결된다.

제 2 장 동아리연합회 총회

제7조(구성) 동아리연합회 총회는 본회의 회원 전체로 한다.

제8조(지위) 동아리연합회 총회는 동아리 활동 및 동아리인 전체에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토의, 결정한다. 제9조(의장) 동아리연합회 총회의 의장은 동아리연합회 회장이 된다.

제10조(소집)

- 동아리연합회 총회는 운영위원회 2/3 이상의 참석, 2/3 이상의 찬성, 또는 동아리 대표자 회의의 요구 가 있거나 재적 동아리인 1/10이상의 회원과 재적 동아리 1/4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동아리연합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5.3.19. 개정)
- 동아리연합회 총회는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5.3.19. 개정)

제 3 장 동아리연합회 대표자 회의

제11조(지위) 동아리 대표자 회의는 본회의 총회소집이 어려울 때 상시적으로 개최하는 심의, 의결기구이다.

제12조(구성) 대표자 회의는 운영위원회 구성원 및 동아리 회장으로 구성되고 안전에 관련된 집행부장이 참석할 수 있다. 단, 회장 부재시 각 동아리에서는 책임 있는 대표를 보내 동등한 자격을 행사할 수 있다.(‘15.4.16. 개정)

제13조(권한)

- 각 분과와 집행부서의 사업 계획 및 심의 의결권
- 회칙 개정안 발의 및 심의 의결권
- 총회 소집권
- (삭제)
- 예산안 심의 확정권
- 집행부서 및 분과의 신설 통폐합권
- 동아리연합회장의 탄핵 의결권
- 동아리 징계 심의 의결권
-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권
- 중앙동아리 승격에 대한 심의 의결권(‘19.03.19. 개정)

제14조(소집)

- (정기 회의) 정기 대표자 회의는 1년 동안 (2개월 주기) 4번 열려야 하며 그 일정은 학사일정에 따라 유 동적으로 조절하여 개최할 수 있다. (단, 학사 일정에 따라 예외는 둔다.)(‘14.2.23. 개정)
- (임시 회의) 임시 회의는 운영위원회 과반수 이상의 요구 또는 재적 동아리 대표자 1/4 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다. 단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동아리연합회장의 발의로 소집할 수 있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15조(구성) 동아리연합회장, 부회장과 국장 1명, 교양, 학술, 봉사, 공연예술, 문예창작, 체육, 종교 이상 7개 분과의 분과장으로 구성한다.(14.2.23. 개정)

제16조(역할)

- ① 실질적인 동아리 행사를 통해 동아리 활성화에 분야별로 기여한다.
- ② 각 분과 산하의 동아리인의 의사를 결집시킨다.
- ③ 동아리연합회의 행사를 분담하는 역할을 한다.

제17조(권한)

- ① 개별사업에 대한 운영예산편성 및 집행권한을 누린다.
- ② 집행부 신설 및 통폐합을 대표자 회의에 발의할 수 있다.
- ③ 임시 대표자 회의 소집 요구권
- ④ 집행부원의 임명동의권 (16.05.25 개정)
- ⑤ 상황에 따라서는 각종 대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⑥ 동아리연합회장의 발의에 대한 동의권
- ⑦ 징계안 발의권
- ⑧ 기타 중요한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권
- ⑨ 가등록 동아리 등록에 대한 심의 의결권(19.9.10. 개정)

제18조(회의) 운영위원회 회의는 동아리연합회장이 주관하며, 매월 2회 이상 정기 운영위원회 회의를 갖는다.

제19조(동아리연합회장)

- ① (지위) 동아리연합회를 대표하며 총회, 대표자 회의,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동아리인의 모든 자율적 행사를 주관한다.
- ② (권한) 총학생회의 운영위원이 된다. 총회의 소집 요구권, 집행 부서장의 임명권, 대표자 회의 소집 요구권, 예산 집행 승인권, 회칙 개정 발의권, 기타 중요한 안건 발의권.
- ③ (임기)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보궐 선거시 전임 회장의 잔여 기간의 그 임기로 한다.

제20조(동아리연합회 부회장)

- ① (지위와 역할) 회장을 보좌하고 권위시 권한을 대행한다. 또한 집행부서의 각 업무를 총괄하며 각 동아리 및 분과별 활동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21조(분과장) ('21.11.29. 개정)

- ① (지위) 분과를 대표하며 운영위원이 된다.
- ② (구성)
 1. 학술분과, 교양분과, 문예창작분과, 체육분과, 공연예술분과, 종교분과, 봉사분과 각각 1명의 분과장을 임명한다.
 2. 동아리 대표학생과 겸직이 가능하다.
- ③ (권한) 분과회의 소집권, 분과 예산 집행권, 분과 특성에 맞는 제반 활동을 심의, 결정하여 집행한다.

제 5 장 집행부회의

제22조(지위)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각 부서는 필요에 따라 국장 및 부원을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 를 구성할 수 있다.(15.2.3. 개정)

제23조(구성) 동아리연합회회장, 부회장, 4개국으로 구성하며, 각 국에는 국장 1명, 차장 1명 및 필요에 따라 집행부원을 둘 수 있다.(15.2.3. 개정)

제24조(역할)

- ① 대표자 회의 및 운영위원회의 제반 의결 사항을 실무 집행한다.
- ② 동아리연합회의 전반적 업무와 사업을 기획, 집행한다.

제 6 장 분과회의

제25조(목적) 각 분과의 특성을 근거로 분과 고유의 업무를 논의하면서 분과 내의 통합력을 형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6조(구성) 분과에 소속된 동아리 대표자와 분과장으로 구성한다. (20.09.17 개정)

제27조(역할)

- ① 분과의 제반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② 동아리연합회의 행사를 분담할 수 있다.
- ③ 분과장 탄핵 및 발의 의결권

제28조(소집)

- ① 정기 분과 회의는 월 1회 개최한다.(14.3.27. 개정)
- ② 임시 분과 회의는 분과장 또는 분과 소속 동아리 대표자 1/3 이상의 요구로 분과장이 소집한다.(14.3.27. 개정)

제 7 장 재정

제29조(예산의 편성 및 심의)

- ① 본회의 재정은 동아리연합회 예산 및 기타 보조금으로 한다.
- ② 동아리연합회 차원의 행사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은 본회의 수입이 된다.
- ③ 각 사회 단체의 동아리 전체에 대한 기부는 본회의 수입이 된다.

제30조(예산의 편성 및 심의)

- ① 본회의 예산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편성되며 학기초 대표자 회의에서 확정한다.
- ② 본회의 회기는 1년으로 한다.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임)
- ③ 예산편성에 참고되는 평가상 기간은 1학기 3월 1일~8월 31일, 2학기 9월1일~2월 말일까지로 정한다.(15.9.3. 개정)

제31조(결산 보고) 결산은 심의를 거쳐 학기말 대표자 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예산 집행) 예산의 심의 편성된 내용을 사무국장이 회장의 승인을 받는다. (16.05.25 개정)

제33조(이월) 흑자 예산의 잉여금을 다음 회의의 예산으로 이월한다.

제34조(동아리 지원금)

- ① 각 동아리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교비 지원으로 한다.
- ② 동아리지원금은 매학기 초 실시하는 동아리 등급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 ③ 추가지원금은 행사 목적과 규모에 따라 지급되며 상한액은 매학기 동아리연합회에 따른다.
- ④ 지원금 신청서를 선제출하여야 하며, 승인된 경우 집행이 가능하다. 지원금 사용 후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9.17 신설)
- ⑤ 제37조에 따라 주의 조치를 받은 중앙동아리는 징계받은 학기의 지원금 중 20%를 다음학기 지원금에서 제외 후 지급받는다. (22.11.25. 신설)

제 8 장 징계

제35조(징계 및 구제)

- 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동아리는 대표자 회의에서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동의로 주의, 경고 또는 등록 취소의 징계 조치를 구두 또는 문서로 알릴 수 있다. (22.11.25. 개정)
- ② 징계안 발의는 운영위원 2/3이상, 동아리 대표자 15인 이상의 서명 날인된 요구에 의한다.
- ③ 제36조에 해당하는 동아리는 운영위원회에서 경고 또는 등록 취소의 징계 조치를 해당 동아리에게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하여야 한다.
- ④ 등록 취소의 대상이 되는 동아리는 15일 안에 저항권을 발동하여 이를 문서화하여 제출하였을 때 운영 위원회에서는 다음 개최되는 대표자 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단 15일 안에 저항권을 발동하지 않았을 시에는 자동으로 등록 취소가 된다.
- ⑤ 저항권을 발동한 동아리는 대표자 회의에서 저항의 사유를 발표하여야 하며 전체 대표자 재적인원 과반 수 이상의 참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 보통, 비밀, 평등, 직접의 원칙에 따른 찬/반 투표로 동의를 얻어 구제받을 수 있다. 구제가 인정된 동아리의 징계 사항은 그 즉시 대표자 회의에서 재논의 후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타 징계 또는 무효처리 한다. (15.3.19. 개정)

제36조(경고 또는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사항)

- ① 정기 대표자 회의에 2회 이상 불참하였을 경우 가등록 동아리, 중앙동아리에 관계없이 주의 또는 경고가 부여가 된다. (22.11.25. 개정)
- ② 본회의 제반 활동을 저해하고 심대한 손상을 입히는 경우 가등록 동아리, 중앙동아리에 관계없이 경고조치의 대상이 된다. (22.11.25. 개정)
- ③ 동아리연합회는 1,3 분기 대표자회의 개최 최소 7일전 다음과 같은 평가에 따라 1차 평가상 대상의 중앙동아리를 사전 공지하고 대표자 회의에서 2차 평가를 실시한다.(20.9.17. 개정)

평가지표		평가항목	배점
1차 평가	행사참여도와 관심도	대표자회의, 분과회의 * 미참석 시 1회 당 감점 5점 * 감정의 한계는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 사유서 연 1회 인정	10
		대표자회의 의결사항 * 미준수 시 일 또는 항목 당 감점 5점 * 감정의 한계는 없음을 원칙으로한다 * 사유서 연 1회 인정	10
		서류제출도 * 미준수 시 일 또는 항목 당 감점 5점 * 감정의 한계는 없음을 원칙으로한다	10
1차 평가	동아리 운영	제출 서류(활동보고 및 수상실적) 및 동아리 등록 인원 명부 상 허위 사실 기재 적발 시 항목(인)당 전체점수에서 감점 10점	(10)
		동아리 목적에 맞는 활동이나 모임 실시 여부에 대한 보고서 제출 * 활동보고서는 8인 이상 참여한 모임이어야 한다 * 8개 미만으로 제출 시 미제출 보고서 1개당 감점 5점 * 한 달에 1개 미만으로 제출 시 감점 5점(단, 방학인 1,2,7,8월 제외) * 제출기한은 각 행사 후 1주일 이내, 제출 방식은 해당년도 동아리 연합회가 정한 방식을 따른다. 미준수시 해당 보고서는 무효 처리	40
	사회적 물의	타 동아리방 무단 침입 및 손해 포함 사회적 물의로 판단되는 행위 시 * 건 당 감점 10점 * 해당 사항의 판단은 운영위원회 재적인원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따라 결정	(10)
	기타 (가산점)	동아리연합회 주관 행사 참여 및 타 동아리 주최 행사 및 공연 참여시 * 참석인원 5인당 가산점 1점 * 참여 시 인원파악이 가능한 사진을 동아리원 명부와 함께 동아리연합회 측에 당일 내로 전송	(10)

2차 평가	전체대표자 평가	1차 평가 총점 70점의 70% 미만(49점) 동아리는 2차 평가 대상이 되며, 평가주체는 대표자회의의 구성원으로 한다. 총점 100점에서 전(前) 2차 평가 결과의 평균 점수 이하의 동아리는 중앙동아리 자격이 박탈된다. * 전(前) 2차 평가 대상이 5개 동아리 이상일 경우의 평균점 계산은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다. * 교체 대상 동아리의 회실 철수 기한은 결과 발표 이후 15일 이내 (위기간 이후 동방 내 비품 집행권한은 시점까지 본교가 가진다.)	30
		타당성 및 신뢰성 (15점) 추후 개선가능성 (15점)	
합계			100
위 평가 상 점수에 대해서는 전 동아리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④ 위 평가 후 중앙동아리, 가등록동아리 교체결과에 대해서 동아리연합회장은 그 즉시 공고한다. 또한 교체 외 여분의 공간에 대해서는 분과회의상 사용용도에 대해서 건의, 운영위원회 심사, 대표자회의에서 결정 하도록 하고 동아리연합회 회장은 그 즉시 대표자회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실행한다. ('15.3.19. 제정)
- ⑤ 가등록 동아리의 경우, 활동보고서 점수가 19점 미만이면 가등록 동아리 등록 취소의 대상이 된다. ('19.11.27. 개정)
- ⑥ 2학기 연속 동아리 등급 평가 하위 4개의 동아리는 중앙동아리 자격이 박탈된다. ('19.11.27. 개정)

제37조(징계 결과)

- ① 경고 조치를 당한 동아리는 예산 분배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② 경고 조치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았을 시는 1회에 한하여 재 경고를 하고 그 이후에는 동아리 등록을 취소하고 해당 동아리 방을 대표자 회의를 거쳐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동아리에게 양도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경고 조치는 2년동안 유효하며 2회 이상의 경고 조치를 당할 경우 중앙동아리와 가등록 동아리 모두 등록 취소의 대상이 된다. ('22.11.25. 개정)
- ④ 가등록 동아리, 중앙동아리에 관계없이 주의 조치는 1년 동안 유효하며 2회의 주의 조치를 당할 경우 경고 조치 1회로 간주한다. ('22.11.25. 신설)

제 9 장 탄핵 소추

제38조(동아리연합회장 탄핵)

- ① 전체 동아리 회원의 1/10이상 또는 동아리 대표자의 1/4이상 또는 분과장 3인 이상의 발의로 대표자 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 ② 동아리연합회장의 탄핵이 의결된 경우 보궐 선거를 하며 잔여임기가 60일 이내일 경우에는 호선한다.

제39조(분과장 탄핵)

- ① 분과 회원 1/4이상의 발의로 정기 분과 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되며 분과 소속 동아리 대표자 1/2이상의 출석과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분과장 탄핵 의결시 보궐 선거를 하며 잔여 임기가 60일 이내일 경우에는 호선한다.

제 10 장 동아리 등록 (20.09.17 전면개정)

제40조(등록)

- ① '동아리'가 본 연합회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를 등록이라 말한다.
- ② 등록은 가등록, 정식등록, 재등록으로 분류한다.
- ③ 가등록은 정식등록 되어있지 아니한 동아리가 본 연합회의 중앙동아리로 가입하기 위한 예비적인 절차를 의미한다.
- ④ 정식등록은 가등록을 수행한 동아리가 가등록 승인일로부터 2학기 후 평가를 통해 본 연합회의 중앙동아리로 등록하기 위한 절차를 의미한다.
- ⑤ 재등록은 본 연합회의 회원인 동아리가 활동을 계속하기 위한 재가입 절차를 의미한다.

제41조(가등록)

- ① 가등록 동아리는 분과회의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표자회의에서 신규등록 여부를 의결한다.
- ② 동아리의 활동은 전 단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동아리이어야 하며, 본회의 목적에 반하여서는 안된다. (단, 단과대학 산하에 있는 동아리는 본회의 등록자격을 결하며, 등록하고자 하면 단과대 동아리 등록을 취소하고 전 단국인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 ③ 가등록시 준비서류는 제44조를 준용한다.

제42조(정식등록)

- ① 본 연합회의 가등록동아리가 중앙동아리로 승격하기 위한 과정이다.
- ② 정식등록신청은 매년 1학기과 2학기의 정해진 기간 내에 가능하다.
- ③ 정식등록 심의는 동아리 대표자회의에서의 평가결과에 따른다.
- ④ 신규 동아리 등록대상은 제 41조에 의하여 가등록된 동아리 중 두 학기 이상 등록한 동아리로 한다. (단, 정식등록 전에 제36조에 의하여 경고 1회를 받은 경우 두 학기 동안 정식등록이 추가로 제한된다.) ('22.11.25. 개정)
- ⑤ 기존 동아리 제명이나 새로운 동아리 공간이 확보된 상태 하에서 위 1항의 동아리는 대표자회의를 통해 의결, 등록할 수 있다.
- ⑥ 가등록 동아리 승격 평가는 해당 년도 동아리 운영위원회가 정한 평가 기준표를 따른다. ('16.9.7. 개정)

제43조(재등록)

- ① 본 연합회에 등록된 동아리(가등록동아리 포함)가 동아리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가입상태를 1학기 단위로 연장하는 행위이다.
- ② 재등록은 원칙적으로 매학기 1회 수행해야 한다. 등록기간은 3월, 9월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동아리연합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44조(등록서류)

- ① 동아리 회칙 1부(단, 동아리 전 회원의 의사로 회칙이 불필요함을 결의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유서와 동아리 활동강령 1부를 대신 제출할 수 있다.)
- ② 30인 이상이 서명한 회원명부 1부 (단, 동아리 회원은 3개 단과대학 이상의 학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③ 前학기 동아리 활동 내용 및 동아리 등록 목적, 동아리 소개서 (단, 前학기 동아리 활동내용은 재등록 동아리에 한한다.)
- ④ 동아리 활동계획서

제45조(의결과 완료)

- ① 등록은 매학기 초에 하며, 각 동아리는 등록기간에 제44조에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동아리연합회에 등록한다.
- ② 등록마감과 함께 동아리연합회장은 즉시 이를 공고하며, 동아리 가등록은 제17조 9항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재등록 의결 또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 ③ 동아리 정식등록은 제14조 10항에 의거해 대표자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④ 동아리 대표자 회의에서 정식등록이 확정된 경우 동아리연합회장은 이를 3일 안에 공포해야 한다.

제46조(등록 기간)

- ① 동아리 등록 기간은 매년도 3월, 9월 말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각 학기마다 운영위원회에서 재등록과 가등록 및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 ③ 동아리의 활동기간은 등록일로부터 다음 학기 등록일까지이며, 동아리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동아리는 등록기간에 제 44조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등록원을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④ (삭제) (20.09.17. 개정)

제 11 장 가등록

제47조(가등록 동아리 권한)

- ① 가등록된 동아리는 모든 활동적인 면에서 정규 동아리와 유사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단, 대표자 회의에서 의결권, 동아리 지원금 및 자치공간 확보권, 동연회장선거권에 관해 그 제한을 둔다.)(15.9.3. 개정)
- ② 가등록 동아리 활동은 기존 동아리와 같이 새내기 유치와 홍보, 행사 공간 조정회의 참석/확보권 등을 보장한다. (단, 동아리내 활동이 아닌 단국 전체 학우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외적인 활동에 한해 동아리연합회에 신고하여 이를 동아리연합회가 알 수 있도록 한다.)
- ③ 제42조에 의거 정식등록을 할 수 있다.

제48조(가등록 동아리 재등록)

- ① 가등록 동아리의 등록기간은 46조 1항을 준용한다. 해당 기간에 재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등록 무효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준비서류는 제44조를 준용한다.

제49조(가등록 동아리의 승격)

동아리 연합회는 대표자회의 개최 최소 7일전 승격 대상의 가등록 동아리를 사전 공지하고 대표자 회의에서 순환동아리 평가를 실시한다. 순환동아리평가 평균점수 계산시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22.11.25. 개정)

제50조(가등록 동아리에 대한 공고)

- ① 동아리에 대한 공고는 대자보 등을 통한 공개 공고를 원칙으로 한다.
- ② 통보나 공고 사항을 알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동아리에 있으며 동아리연합회는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 12 장 선거

제51조(선거의 시기) 선거의 시기는 매 학년도 11월중에 실시한다.

제52조(동아리연합회장)

- ① 회장, 부회장제로 한다.
- ② 피선거 자격 : 본회의 회원으로 4학기 이상 본교 등록 하였으며 2학기 이상 동아리 등록을 필한 자로 본회의 100인 이상 추천을 받은 자.(15.9.17. 개정)
- ③ 임기 :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09.09.09 개정)
- ④ 당선 : 유효 투표 중 최고 득표자를 당선으로 한다. 동수일 경우에는 재투표를 하고 단독일 경우에 찬 반투표로 한다. 찬반 동수일 경우에는 이를 당선으로 본다.
- ⑤ 후보등록 : 선거 개시 7일 전까지 선관위에 등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등록 서류는 선거시행세 칙을 따른다.)

제53조(분과장)

- ① 해당 분과 본교회의에서 해당 년 12월 31일까지 선출한다.(14.12.4. 개정)
- ② 자격은 본 회의에 등록된 동아리의 회원으로 한다.
- ③ 임기는 차기 연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 ④ (자격) 2학기 이상 본교 등록하였으며 2학기 이상 동아리 등록을 필하며 해당 분과 소속 회원으로 선출한다. (21.11.29 신설)

제54조(선거관리위원회)

- ①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로 한다. 단 권한이 동아리 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될 시, 그 위원장은 동아리연합회장으로 한다. 단 선관위원이 출마 또는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선관위원 자격은 박탈된다. (16.05.25 개정)
- ③ 분과장 선거관리위원회 또한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로 한다. (21.11.29 개정)
- ④ 시기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개시 15일 전까지 구성 완료한다.
- ⑤ 업무와 권한
 - 1) 입후보자의 자격심사.
 - 2) 선거 홍보용 유인물 및 벽보 작성(상호비방 제외)
 - 3) 선거 운동의 방법과 일정의 조정
 - 4) 선거장의 질서유지 및 감독
 - 5) 선거 및 당선 유효여부 결정
 - 6) 재선거 여부결정(이의제기 : 투표일 이후 24시간 이내, 이의제기 통과 후 5일 이내에 실시)

- 7) 선거 시행 세칙의 결정
- 8) 기타 선거에 관련된 제반 업무 관리

제55조(선거권)

- ① 선거권은 재학중인 동아리 회원에게 주어진다.
- ② 선거인 명부는 선거 개시일 15일 전까지 작성하기로 한다. (단, 재등록서류에 기해 5인을 초과할 수 없다.)

제56조(선거의 방법)

- ① 본회의 선거는 보통, 비밀, 직접, 평등 선거로 한다.
- ② 선거인은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자격증을 지참해야 한다.

제57조(보궐선거)

- ① 본회 동연 회장이 특별한 사유로 인해 궐위되거나 대표자 회의로부터 탄핵을 받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본회 동연 회장의 잔여 임기가 150일 이상의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 하여야 한다. 단, 잔여 임기가 150일 미만일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자가 그 직을 승계한다. (16.05.25 개정)
- ② 보궐선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항의 단서조항을 준용한다.

제 13 장 부칙

제 1조(회칙 제, 개정) (‘15.3.19. 개정)

- 1. 회칙의 제, 개정안은 동아리연합회장이 발의하거나 동아리 대표자 20인 이상의 요구로 발의한다.(‘15.3.19. 개정)
- 2. 회칙 제, 개정안은 대표자 회의의 재적 인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됨을 원칙으로 한다. (‘15.3.19. 개정)

제 2조(효력) : 본회의 통과 즉시 발효한다.

부칙(2014.2.23)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4. 2. 23.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동아리연합회에 소속된 모든 중앙동아리 및 산하기구에 적용된다.

제3조(변경사항)

- ① 제 14 조(소집) : 1. 정기회의 - 정기 대표자 회의는 1년 동안 (2개월 주기) 4번 열려야하며 그 일정은 학사일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절하여 개최할 수 있다. (단, 학사 일정에 따라 예외는 둔다.)(‘14.2.23. 개정)
- ② 제 15 조(구성) : 동아리연합회장, 부회장과 사무국장, 교양, 봉사, 어학, 연구, 예술, 종교, 체육 이상 7개 분과의 분과장으로 구성한다.(‘14.2.23. 개정)
- ③ 제 23 조(구성) : 동아리연합회장, 부회장, 5개국로 구성하며, 각 국에는 국장 1명과 부장 1명 차장 1명 및 필요에 따라 집행부원을 둔다.(‘15.2.3. 개정)
- ④ 제 28 조(소집) : 1. 정기 분과 회의는 월 1회 개최한다.(‘14.3.27. 개정)
- ⑤ 제 28 조(소집) : 2. 임시분과 회의는 분과장 또는 분과 소속 동아리 대표자 1/3 이상의 요구로 분과장 이 소집한다.(‘14.3.27. 개정)
- ⑥ 제 40 조(신규 동아리 등록 자격) : 3. 단 2001학년도에 한해 가등록 후 다음 대표자회의에서 정규 등 록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14.3.27. 삭제)
- ⑦ 제 35 조(경고 또는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사항) : 1. 정기 대표자 회의에 2회 이상 불참하였을 경우 자동으로 경고부여가 된다.(‘14.12.4. 개정)
- ⑧ 제 36 조(징계 결과) : 3. 경고 조치는 2년 동안 유효하며 2회 이상의 경고 조치를 당할 경우는 등록 취소의 대상이 된다.(‘14.12.4. 개정)
- ⑨ 제 49 조(분과장) : 1. 해당 분과 분과회의에서 해당 년 12월 31일까지 선출한다.(‘14.12.4. 개정)
- ⑩ 제 22 조(지위) :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각 부서는 필요에 따라 국장 및 부원을 둘 수 있으며, 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15.2.3. 개정)
- ⑪ 제 23 조(구성) : 동아리연합회장, 부회장, 5개국으로 구성하며, 각 부에는 국장 1명, 부장 1명, 차장 1명 및 필요에 따라 집행부원을 둘 수 있다.(‘15.2.3. 개정)
- ⑫ 제 34 조(징계 및 구제) : 5. 저항권을 발동한 동아리는 대표자 회의에서 저항의 사유를 발표하여야 하며 전체 대표자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 보통, 비밀, 평등, 직접의 원칙에 따른 찬/반 투표로 동의를 얻어 구제 받을 수 있다. 구제가 인정된 동아리의 징계 사항은 그 즉시 대표자 회의에서 재논의 후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타 징계 또는 무효처리 한다.(‘15.3.19. 개정)
- ⑬ 제 35 조(경고 또는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사항): 동아리연합회는 2.4 분기 대표자회의 개최 최소 7일전 다음과 같은 평가에 따라 1차 평가대 상의 중앙동아리를 사전 공지하고 대표자회의 에서는 2차 평가를 실시한다. 단, 중앙동아리 승격대상의 가 등록동아리 상 동점 상황 발생 시 동아리연합회장은 그 즉시 7일후 임시 대표자회의를 개최 하고 임시 대 표자회의의 간 해당 동아리 PPT 발표를 실시한다.(‘15.3.19. 제정)
- 위 평가 후 중앙동아리, 가등록동아리 교체결과에 대해서 동아리연합회장은 그 즉시 공고한 다. 또한 교체 외 여분의 공간에 대해서는 분과회의의 상 사용용도에 대해서 건의, 운영위원회 심사,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 하도록 하고 동아리연합회 회장은 그 즉시 대표자회의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실행한 다.(‘15.3.19. 제정)
- ⑭ 제 10 조(소집)
 - 1. 동아리연합회 총회는 운영위원회 2/3 이상의 참석, 2/3 이상의 찬성, 또는 동아리 대표자 회의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 동아리인 1/10이상의 회원과 재적 동아리 1/4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동아리연합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5.3.19. 개정)
 - 2. 동아리연합회 총회는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5.3.19. 개정)
- ⑮ 13장 부칙 제 1조(회칙 제, 개정) (‘15.3.19. 개정)
- 회칙의 제, 개정안은 동아리연합회장이 발의하거나 동아리 대표자 20인 이상의 요구로 발의한다.(‘15.3.19. 개정)
- 회칙 제, 개정안은 대표자 회의의 재적 인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됨을 원칙으로 한다. (‘15.3.19. 개정)
- ⑯ 제 12 조(구성) : 대표자 회의는 운영위원회 구성원 및 동아리 회장으로 구성되고 안전에 관련된 집행 부장이 참석할 수 있다. 단, 회장 부재시 각 동아리에서는 책임 있는 대표를 보내 동등한 자격을 행사 할 수 있다.(‘15.4.16. 개정)
- ⑰ 제 30 조(예산의 편성 및 심의)
- 예산편성에 참고되는 평가 상 기간은 1학기 : 3월 1일~8월 31일 2학기 9월1일~2월 말일까지 로 정한다.(15.9.3. 개정)
- ⑱ 제 40 조(신규 동아리 등록 자격)
- 1. 신규 동아리 등록 대상은 제43조에 의하여 가등록된 동아리 중 두 학기 이상 등록한 동아리로 한다.(‘15.9.3. 개정)

⑭ 제 35 조(경고 또는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사항)

3. 동아리연합회는 2.4 분기 대표자회의 개최 최소 7일전 다음과 같은 평가에 따라 1차 평가상 대상의 중앙동아리를 사전 공지하고 대표자회의 예서는 2차 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중앙동아리 승격대상의 가등록동아리 상 동점상황 발생 시 동아리연합회장은 그 즉시 7일후 임시 대표자회의를 개최 하고 임시 대표자회의 간 해당 동아리 PPT 발표를 실시한다.(15.3.19. 개정)

⑮ 제 44 조(가등록 동아리 권한)

가등록된 동아리는 모든 활동적인 면에서 정규 동아리와 유사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단, 대표자 회의에서 의결권, 동아리 지원금 및 자치공간 확보권, 동연회장선거권에 관해 그 제한을둔다.)(15.9.3. 개정)